프랑스 테러와의 전쟁 : 국가비상사태 선포

강소휘

프랑스 파리 2대학 팡테옹-소르본-아사스 법학대학 유럽비교법률 석사과정

(사진 출처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사이트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관련 기사)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파리테러[1] 이후 여전히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2]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행정당국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통행금지, 영장 없는 가택수사 및 가택연금 허용, 공공기간 및 상업시설의 폐쇄, 집회금지, 언론통제 등)하더라도 테러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현재까지 경찰 및 1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잠재적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국가비상사태'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시사 하는 점은 무엇일까?

---

1) 2015년 11월 13일, 독일과 프랑스의 친선 축구경기 중 경기장 밖의 폭발음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파리테러'의 서막이 열렸다. 곧이어 파리 10구 리퍼블릭(République)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하였고, 특히, 프랑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인 '바타클랑 공연장'에 4명의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관객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무고한 시민들 약 130여명이 사망하였다.

2) 비상사태(Etat d'urgence)란,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국가적 위난이 닥쳤을 때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프랑스 법률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편찬, 388페이지 참조 및 두산백과 국가비상사태 정의 참조)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물론, 테러 이후 현재까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프랑스 내(內) 국가안보 수호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 파리테러의 경우, 기존 하드 타깃(국가주요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소프트 타깃(무고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프랑스인들에게 '잠재적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무고한 프랑스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 테러조직을 향한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 국민들은 신속하게 테러범들을 체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군·경찰력의 투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필수불가결한 선택[3]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테러가 발생하고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프랑스 정부의 현 테러대응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과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싸늘하기만 하다. 이들은 정부의 태러대응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 초안이 국가보안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자유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왔다.

최근 한국에서는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국가기관이 개개인의 정보수집 및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보안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법제화되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프랑스는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이 두 가치의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3) 뉴스 전문 채널 <BFMTV>에 의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74%의 응답자가 국가비상사태 제1차 3개월 연장(2015년 11월 20일 법률)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약 60%의 프랑스인들이 국가비상사태 조치가 태러대응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선포 배경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약 1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비상사태[4]를 선포했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파리 연쇄 테러는 프랑스와 전 세계가 수호하는 가치들을 위협하는 이슬람 국가(IS)의 '전쟁행위'[5]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연대적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러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프랑스 당국은 파리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하였고, 테러 발생 인근지역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였으며, 국경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인 2차 테러를 막기 위해 테러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는 자들에 한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가택수사 및 가택연금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권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고 해서 프랑스 행정당국이 법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비상사태는 선포 후 12일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2일 만에 모든 테러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테러조직을 찾아내 소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동의는 피해갈 수 없는 최소한의 합법적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 프랑스 국가비상사태가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도 프랑수와 올

---

4)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는 북아프리카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벌인 알제리 전쟁이 시작된 1955년에 처음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동의 자유(CE 20 janv. 1959, Ministre de l'Intérieur c/ Rocher et c/ Livret), 가택연금(CE 22 avr. 1966, Ministre de l'Intérieur c/ Mony et Tochou: internement administratif) 및 언론의 자유(CE 20 déc. 1967, Ministre de l'Intérieur c/ Fabre Luce; CE 25 juill. 1985, Dagostini)를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1984년 누벨칼레도니와 2005년 북아프리카 이민자 출신들이 거주하는 파리 북쪽 생드니에서 일어난 폭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근교도시에 야간통행 금지령 등을 내리는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었다.(Le Petit Juriste, « Le 13 Novembre 2015, L'état d'urgence et la fermeture des frontières », Antoinin PECHARD, p.5)

5)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중 발췌 : « C'est un acte de guerre qui a été commis par une armée terroriste, Daech, une armée de jihadistes, contre la France, contre les valeurs que nous défendons partout dans le monde, contre ce que nous sommes, un pays libre qui parle à l'ensemble de la planète » (France 24 채널 담화문 기사 및 비디오 링크 : http://www.france24.com/fr/20151114-attentats-paris-hollande-bataclan-stade-france-armee-daech-syrie).

랑드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장 요청에 국회가 3개월씩 비상사태를 두 차례나 동의하는 법률[6]들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 연장이 결정되자마자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합법적 권리들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억압하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테러 이후,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사전허가 없이 인터넷 전자통신을 감시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행정권력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규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인권단체들과 프랑스 국민들의 '국가비상사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국가비상사태를 정당화하는 긴급한 위험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테러공격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비상사태 중지를 거부하는 결정[7]을 내리면서 두 번째 비상사태 연장법률이 무리 없이 가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II. 뜨거운 감자 : 국가안보 VS 개인의 자유

<u>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상사태 반대시위 고조</u>

(2016년 3월 12일자 르몽드지, « 국가비상사태 반대, 길거리로 나온 수백명의 시민들 » 기사 발췌)

프랑스 국회가 테러라는 긴급한 위험을 마주하고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6) 2015년 11월 20일 비상사태 연장 법률 (2016년 2월 26일까지)과 2016년 2월 20일 비상사태 2차 연장법률 (2016년 5월 26일까지).

7) Ordonnance du 27 janvier 2016, Ligue des droits de l'homme et autres, n°396220, Conseil d'Etat.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이러한 국회의 비상사태 연장 결정은 프랑스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프랑스 비상사태 연장이 결정된 이후, 파리, 리옹, 보르도 등 전국 대도시에서 비상사태 중단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끊임없이 열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두 번째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파리에서만 2만 명의 시위대가 시민의 자유보장을 주장하며 비상사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는 등의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의 1955년 국가비상사태 법률 개정 논란

프랑스 정부는 이번 파리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찰이 야간 가택수색, 신분증 및 소지품 검사 등 보다 확대된 수사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기존 국가비상사태법[8]의 개정을 주장했다. 정부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국가 보안관련 행정부의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1955년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양상은 국제적인 조직망을 바탕으로 고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1955년도 제정된 상기 법률은 이러한 테러리즘의 기술적 진보와 현실적 변화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비상사태시, 정부는) 모든 종류의 출판물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제11조를 예로 들었다. 60년이 지난 오늘날 해당 조항은 헌법이 수호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과 동시에 인터넷의 발달로 현실적인 언론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파리테러가 발생한지 5일 만에 발 빠르게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제출 법률 개정안 자체를 표

8) Loi sur l'état d'urgence de 1955.

결하기보다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는 법률(2015년 11월 20일)을 통해 1995년 법률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개정했다.

개정이 된 규정들은 주로 경찰들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테러진압을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띄고 있다. 그래서 개정된 주요 규정들은 '가택연금, 집회해산과 행정적 수색'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가택연금관련, 내무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과 법질서를 위협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가택연금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택연금 시간을 24시간 중 최대 12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테러를 조장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모든 단체는 장관회의를 통하여 집회해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로렌대학 올리비에 르노디(Olivier RENAUDIE) 교수는 해당 규정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결과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세부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9] 예를 들면, 일부 회원들의 개인적인 테러 가담행위만으로 단체의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수색 관련 규정에서는 도지사(Préfet)가 밤낮에 상관없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거주지 포함)들의 수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단순한 거주지 혹은 건물 수색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색하는 동안 발견된 모든 정보기기들의 압류가 가능하다. 더욱이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등과 같은 모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및 테러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논란

프랑스 정부는 2016년 1월 초부터 국가비상사태 이후에도 테러대응이라는 미명하에 행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보장하고자, '국가비상사태'를 헌법상 예외

9) Conférence sur « l'état d'urgence : Réforme et Mise en oeuvre ».

제도로서 규정하는 헌법개정 초안을 검토해 왔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현(現) 프랑스 헌법은 '국가위기'[10]와 '계엄(무장폭동 혹은 전쟁)'[11]의 단 두 가지 경우만 예외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헌법적 예외 제도는 '테러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프랑스 행정당국은 급작스러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이 아닌 일반법률(1955년 국가비상사태 법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하면서, 실질적인 법률개정으로 경찰권을 확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왜 헌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이었을까? 프랑스 행정 당국의 헌법 개정안 상정의 의도는 국가비상사태 아래 이뤄지는 모든 조치들에 합헌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사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프랑스 행정당국은 1955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영장 없는 가택 수색·연금 등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차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를 명문화하여 위헌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대외적인 설명은 조금 다르다. 특히,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헌법적 명문화(明文化)를 통하여 국회에 의해 비상사태의 조건요소들이 비일비재하게 변경·완화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현재 국회는 원하는 만큼 비상사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법률제정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제지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부 제출 헌법 개정 초안은 프랑스 국민적 정서에 반

10)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1) 프랑스 헌법 제36조는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명령으로 선포된다. 12일을 초과하는 계엄의 연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외국과의 교전이나 혹은 무장세력에 의한 혼란이 발생하였을 때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발동되는 것으로 경찰권이 확대되고 일반 시민들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 평상시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계엄은 비상사태와 구별되는데, 비상사태는 민사법원의 권한을 유지시키면서 사상이나 신념이 위험한 자들에 대하여 행정적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률용어집, 387페이지 참조)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가비상사태가 끝난 뒤에도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개인적 자유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 초안에는 국가안보 위협 범죄자의 프랑스 국적박탈 범위 확대 안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 내부에 치열한 의견대립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중국적을 보유한 프랑스 테러범의 경우 프랑스 국적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중국적과는 상관없이 평등하게 국적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었었고, 프랑스 국민 대다수는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하려는 국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었다. 특히,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장관직을 사임하면서까지 국적박탈 규정의 인권(국적권) 침해를 알리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4개월간 프랑스 정치·사회부분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헌법 개정 초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일부 수정되면서 통과[12] 될 수 있었지만 수정된 부분들(비상사태 연장기간 및 국적박탈관련 등)간에 상·하원의 의견의 불일치로 법률안 재검토가 다시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뜨거운 관심에 2016년 3월 30일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결국 헌법 개정 초안을 포기하게 되었다. 결국, 프랑스는 예외적인 경우(테러)에 한하여 국가안보를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지만,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모든 행정부의 행위들을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프랑스다운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사실, '국가비상사태'를 일시적으로 '행정당국과 경찰의 권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였을 때, 테러는 전쟁과 같이 발발 시기나 종전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국가안보의 명목

12) 장관회의를 통하여 프랑스 수상 마뉴엘 발(Manuel Valls)이 2015년 12월 23일 법률 및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2016년 2월 10일 하원에서 통과된 후, 2016년 3월 22일 상원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하에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비상사태' 연장 길거리 반대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테러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으며[13], 프랑스 행정당국이 '비상사태'를 연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입장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가택연금 및 개인정보 수집 등을 가능하게 하는 1955년 국가비상사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심판을 요하는 두 가지의 청구를 제청 받았다.

먼저, 2015년 12월 22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후적 법률심판(QPC)을 통하여 '국가비상사태'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제66조[14]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였다. 헌법 제66조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는 사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는 1955년 국가비상사태 법 제6조에 따라[15], 가택연금 조치가 사법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택연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헌법 제66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최대 12시간으로 가택연금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람들을 구속시킬 만한 시설을 설립하여 가택연금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13) Institut CSA (comprendre pour mieux décider)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13일 파리테러 이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프랑스 국민들은 테러위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71%의 프랑스인들이 테러 이후에도 생활패턴(대중교통이용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Direct Matin 신문기사, 2016년 3월 15일자 참조)

14)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구금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을 준수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을 준수한다.

15) 1955년 국가비상사태 법률은 내무부장관에게 공공의 안녕과 법질서를 위협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택연금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2016년 2월 19일)에서는 1955년 국가비상사태 법률이 규정한 행정적 수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압수수색이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외장하드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을 압류하여 그 안의 정보를 기기주인의 동의 없이 복제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게다가, 사생활보호와 국가안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법률적 보호 장치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III. 국가비상사태 종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프랑스에서는 현재까지 내무부 장관과 각 도지사들에 의하여 총 3439건의 수색, 416건의 주택연금, 14건의 집회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위 모든 행정부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잠재적 테러를 예방하거나 테러범들을 처벌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최근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3439건의 행정적 수색 가운데 단지 5건의 수색이 테러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사법부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통계수치를 보면 '국가비상사태' 아래 이루어진 행정적 조치들의 실제 테러 예방효과는 무척이나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약 3434건의 수색은 결국 테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조치였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인이 공격당한 파리테러의 심각성을 고려해보면, 분명 일시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정부의 필수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테러에 분노하면서도 일상생활을 불안해하던 프랑스 국민들은 잠재적 테러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초기 프랑스 행정당국의 여러 행정조치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국가보안(國家保安)을 위한 행정부의 권력행사가 계속해

서 연장되면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이상이나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회의(懷疑)를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프랑스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5월 26일까지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들끓는 연장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관광수입이 국가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관광시즌을 앞두고 막대한 관광수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벨기에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프랑스 행정당국은 현재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놓여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프랑스는 1600명의 경찰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국경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이는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지만, '국가보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默過)할 수 없다는 프랑스의 혁명정신이 두드러진다. 물론,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이 두 개념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않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2가지의 예외제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